

고령군새마을장학금고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

고 령 군

고령군새마을장학금고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502
----------	-----

제출일자 : 2000년 8월21일

제출자 : 고령군수

1. 폐지사유

새마을지도자의 자녀들에게 매년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새마을지도자의 사기를 앙양하고
승계 지도자 양성하여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발전을 꾀하고자 80년1월1일 부터 운영하여 왔으
나 새마을자녀장학금은 경상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현재 일반회계 예
산(도비50%, 군비50%)에서 지급됨에 따라 장학금고 기금은 더 이상 존치할 이유가 없으므
로 폐지코자 함.

2. 내 용

고령군새마을장학금고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

고령군새마을장학금고설치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이 조례에 의한 장학금고 기금은 일반회계로 전환한다.